

학교체육위원회 규정

제정 2020. 07. 03.

이사회 승인 2020. 07. 30.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문경시체육회(이하 “체육회” 라 한다) 정관 제34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학교체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학교체육 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연구·조사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하여 심의·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교체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직원의 체력향상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
5. 학생, 교직원의 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 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공로자 및 체육장학생 등 선발 추천에 관한 사항
7. 교기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제3조의 각 호와 관련되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고 교직원의 경우 관내 학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관외 학교전출,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

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